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50292 상병급여 및 손해배상(기)

원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Redacted]

소송대리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변론종결

2024. 1. 12.

판결선고

2024. 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급여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꽃게잡이 어선인 [REDACTED] 호의 어선원이었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어선원등의 재해

원고는 2021. 9. 27. 인천 옹진군 덕적면 을도리 인근 해상에서 통발에 잡힌 꽃게를 떼어내는 업무를 하던 중 꽃게 껍질의 돌출된 가시 부위에 좌측 제2수지가 찢리는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는 위 부상이 심해지자 2021. 11. 9. 수술을 받았다.

다. 요양승인결정 등

1)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 2022. 5. 18.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 중위지, 골 골수염, 좌측 제2수지 봉소염, 좌측 제2수지의 이물질'을 상병으로 인정하고, 지정의 료기관을 [REDACTED] 병원으로 하여, 입원 30일(2021. 11. 9. ~ 2021. 12. 8.), 통원 151일(2021. 10. 4. ~ 2022. 3. 3.)의 요양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REDACTED] 병원으로부터 생활근거지에서 요양을 이유로 하는 전원 요양 신청을 받고,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REDACTED] 병원에서 [REDACTED] 병원으로 지정의료기관을 옮겨 요양하게 하는 결정을 하였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3.까지의 요양결정만 있어 요양연기신청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연기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redacted] 병원 전문의는 2022. 6. 11.경 원고를 진료한 이후 "2022. 6. 11. ~ 2022. 8. 6." 치료가 예상된다는 요양연기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위 전문의는 피고로부터 2022. 3. 3.까지만 요양결정이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2022. 6. 17.경 통원예상기간을 "2022. 3. 4. ~ 2022. 8. 3."로 수정하여 요양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는 2022. 6. 27. 원고에 대하여 통원 153일(2022. 3. 4. ~ 2022. 8. 3.)의 요양연기결정을 하였다.

6) 원고는 지정의료기관인 [redacted]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 [redacted] 병원은 2022. 7. 4. 피고에게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마쳤음을 이유로 전원 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7. 19. 원고에 대하여 [redacted] 병원에서 [redacted] 병원으로 지정의료기관을 옮겨 요양하게 하는 결정을 하였다.

7) 원고는 2022. 8. 4. [redacted]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경한 통증은 있으나 손을 이용한 노동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진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원고는 2022. 9. 15. 피고에게 2022. 6. 18.부터 2022. 8. 3.까지의 상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3. 1. 10. 원고의 2022. 6. 18. 이후 요양내역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8호증, 을 제1, 3, 5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도 알지 못하는 치료예상기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2. 6. 11. 진료받을 당시 8주 동안(2022. 8. 6.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유방암 진단을 받은 배우자의 간호와 원고 본인의 약물치료에 전념하다, 다시 2022. 8. 4. 병원을 방문하여 같은 달 25.까지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redacted] 병원 전문의의 2022. 6. 11.자 소견에 반하고, 2022. 8. 4.부터 이후의 치료내용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급여로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급여로 지급한다(어선원재해보험법 제24조 제1항). 이때 '치유'라 함은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2. 6. 18.경 부상이 완치되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22. 6. 18. 이후의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2. 6. 18.부터 2023. 8. 3.까지 어떠한 진료도 받지 않았다.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약물치료에 전념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약물처방을 받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② 원고는 2023. 8. 4. 지정의료기관인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경한 통증은 있으나 손을 이용한 노동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진료일 이전에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③  병원 전문의는 2022. 7. 4. 원고와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마쳤음을 이유로 전원신청을 하였다. 비록 위 전문의가 2022. 6. 11. 원고에 대하여 8주 동안의 치료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당시에 치료기간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다. 위 전문의는 그 후에 원고가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자 2022. 7. 4.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상급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원신청을 한 것이다.

④ 원고는 치료예상기간의 변경과 관련한 억울함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하자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고, 의료기관에서 연기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그 내용을 원고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요양연기신청을 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요양결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요양을 하고자 그 기간을 계산하여 신청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2022. 6. 18.부터 2023. 8. 3.까지 부상이 치유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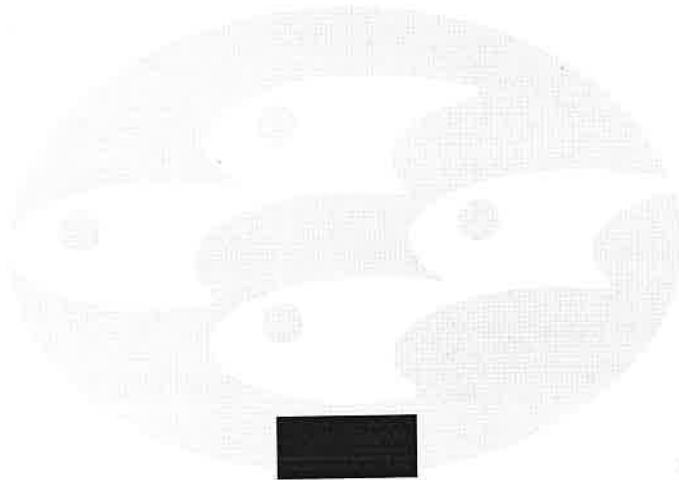


한 다른 증거들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관계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란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22조(요양급여)

- ① 요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해당 어선원등을 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요양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의수족),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9.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 ①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전원 요양)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을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1. 어선원등이 요양하고 있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인력·시설 등이 그 어선원등의 전문적인 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중앙회에 전원(전원)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4조(부상 및 질병급여)

- ①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로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로 지급한다.
- ② 중앙회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어선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요양기간(최초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동안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로 지급한다.
-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상 및 질병급여가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의 지급액으로 한다. 끝.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4. 2. 23.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